

해외유학장학기금 운영규정

(제정 2000. 9. 5.)

(전부개정 2015.12.27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해외유학장학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해외유학장학생이란 본교 해외유학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신청자격 및 방법) ① 해외유학장학생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본교 학부 졸업자
2. 해외 대학 석·박사학위과정 입학자

② 해외유학장학생 신청방법은 해외유학장학생 선발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

제4조(선발방법 및 인원) ① 해외유학장학생은 공개선발하여야 하며, 국제교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② 해외유학장학생 선발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장학금 지급) 장학금액 및 지급기간은 해외유학장학기금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해외유학장학생의 의무) 해외유학장학생의 의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외유학장학생 선발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